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아파트는 종전 규정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동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09.29.>,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은 2020.09.21.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아래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 구분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아래표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본 아파트의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부적격 등)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521,049원 ~9,025,258원	7,947,892원 ~9,537,469원	8,374,735원 ~10,049,68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7,236,193원~ 7,839,208원	8,513,047원~ 9,222,467원	8,513,047원~ 9,222,467원	9,025,259원~ 9,777,362원	9,537,470원~ 10,332,258원	10,049,682원~ 10,887,15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생애최초특별공급 20.09.29 적용), 2020.12.17.[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2020.12.18. 적용) 발표 전에 모집공고 승인 신청된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1. 모집공고 승인 신청된 아파트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2020.12.17.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에 따라 2020.12.18.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 승인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1.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sujain-dg.co.kr) 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 (www.sujain-dg.co.kr)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이 바뀔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모델하우스에 문의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홈페이지(www.sujain-dg.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함.(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 및 견본주택 방문자 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
 - 가.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다.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라.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분양 상담전화 (☎1600-0818) 또는 청약홈 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동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09.29.>,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은 2020.09.21.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생애최초특별공급 20.09.29 적용), 2020.12.17.[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2020.12.18. 적용) 발표 전에 모집공고 승인 신청된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1. 모집공고 승인 신청된 아파트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2020.12.17.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에 따라 2020.12.18.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 승인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1.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 기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09.30. 이 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은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 알림(주택기금과~13, 2018.1.2.)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sujain-dg.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2020.09.2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현재 청약과열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심사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4월 12일(월)	2021년 04월 13일(화)	2021년 04월 14일(수)	2021년 04월 20일(화)	2021년 04월 21일(수) ~ 05월 02일(일)	2021년 05월 03일(월) ~ 2021년 05월 07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 구비서류는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참조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 체결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동 규칙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종전 규정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09.29.>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 - 9383호(2021.03.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4층 12개동 총 1,021세대(조합원 211세대 및 보류지 10세대 제외) 중 일반공급 8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26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7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7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5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1세대)]
- 주차대수와 주차장 층고 : 주차대수 1블럭(총 662대 중 공동주택 654세대, 근린생활시설 8대) 2블럭(총 695대 중 공동주택 684세대, 근린생활시설 11대)
: 지하1(층고 3.9m / 천장고 2.3m), 지하2층(층고3.6m / 천장고 2.3m)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8g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주택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중주택	2021000122	01	068.5600A	68A1	68.5600	23.2694	91.8294	42.8671	134.6965	37.9931	147	14	14	29	4	61	86	9	
				68A2	68.5600	22.5110	91.0710	43.6286	134.6996	37.3619									
		02	068.9000B	68B1	68.9000	24.0325	92.9325	43.0797	136.0122	38.4495	173	17	17	34	5	73	100	7	
				68B2	68.9000	23.2704	92.1704	43.8450	136.0154	37.8129									
		03	068.8500C	68C1	68.8500	23.8102	92.6602	43.0484	135.7086	38.3368	65	6	6	13	1	26	39	3	
				68C2	68.8500	23.0486	91.8986	43.8132	135.7118	37.7014									
		04	084.9600A	84A1	84.9600	28.3901	113.3501	53.1212	166.4713	46.8970	211	21	21	42	6	90	121	14	
				84A2	84.9600	27.4504	112.4104	54.0649	166.4753	46.1164									
		05	084.9100B	84B1	84.9100	28.4898	113.3998	53.0900	166.4898	46.9175	179	17	17	35	5	74	105	7	
				84B2	84.9100	27.5506	112.4606	54.0331	166.4937	46.1370									
		06	105.9500	105	105.9500	33.0137	138.9637	67.4220	206.3857	57.0099	25	0	2	0	0	2	23	2	
		합계										800	75	77	153	21	326	474	4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소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1.10.26	2022.02.25	2022.06.27	2022.10.26	2023.02.27	2023.06.26			
068.5600A	68A1	92	101동 1호,2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6동 1호,2호	1층	2	204,673,000	216,327,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2층	5	204,673,000	225,327,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3~4층	12	204,673,000	234,327,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10층	36	204,673,000	241,327,00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1층이상	37	204,673,000	243,327,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68A2	55	201동 4호, 203동 1호,2호, 206동 4호	1층	3	204,673,000	216,327,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2층	4	204,673,000	225,327,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3~4층	8	204,673,000	234,327,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5~10층	24	204,673,000	241,327,000		446,0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1층이상	16	204,673,000	243,327,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068.9000B	68B1	82	103동 2호,3호 104동 2호,3호	1층	1	205,688,000	212,312,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2층	3	205,688,000	221,312,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3~4층	8	205,688,000	230,312,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5~10층	24	205,688,000	236,312,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11층이상	46	205,688,000	238,312,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68B2	91	201동 2호,3호, 206동 2호,3호	1층	3	205,688,000	212,312,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2층	4	205,688,000	221,312,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3~4층	8	205,688,000	230,312,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5~10층	24	205,688,000	236,312,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068.8500C	68C1	30	103동 1호, 104동 1호	11층이상	52	205,688,000	238,312,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1층	1	205,539,000	206,461,000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1	205,539,000	215,461,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4층	4	205,539,000	224,461,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10층	12	205,539,000	230,461,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11층이상	12	205,539,000	233,461,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68C2	35	201동 1호, 206동 1호	1층	1	205,539,000	206,461,000		412,0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2	205,539,000	215,461,000		421,0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3~4층	4	205,539,000	224,461,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5~10층	12	205,539,000	230,461,000		436,0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11층이상				16	205,539,000	233,461,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084.9600A	84A1	108	102동 1호,2호,3호,4호 105동 1호,2호,3호,4호	1층	2	253,632,000	274,368,00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층	6	253,632,000	285,368,0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16	253,632,000	296,368,000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5~10층	48	253,632,000	305,368,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1층이상	36	253,632,000	307,368,000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84A2	103	202동 1호,2호,3호,4호 205동 1호,2호,3호,4호	1층	3	253,632,000	274,368,000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2층	8	253,632,000	285,368,000		539,0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3~4층	16	253,632,000	296,368,000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5~10층	48	253,632,000	305,368,000		559,0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67,700,000
				11층이상	28	253,632,000	307,368,000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084.9100B	84B1	89	101동 3호,4호, 106동 3호,4호	1층	2	253,483,000	261,517,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층	3	253,483,000	272,517,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3~4층	8	253,483,000	283,517,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10층	24	253,483,000	291,517,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1층이상	52	253,483,000	294,517,000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84B2	90	203동 3호,4호 204동 3호,4호	1층	2	253,483,000	261,517,000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층	4	253,483,000	272,517,000		526,0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57,800,000	
				3~4층	8	253,483,000	283,517,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5~10층	24	253,483,000	291,517,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11층이상	52	253,483,000	294,517,000		548,0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05.9500	105	25	204동 1호,2호	1층	1	316,294,000	295,187,273	29,518,727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2층	2	316,294,000	307,005,455	30,700,545	654,0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3~4층	4	316,294,000	319,732,727	31,973,273	668,0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5~10층	12	316,294,000	328,823,636	32,882,364	678,0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11층이상	6	316,294,000	331,550,909	33,155,091	681,0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8.5600A	068.9000B	068.8500C	084.9600A	084.9100B	105.9500
약식표기	68A	68B	68C	84A	84B	105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전용면적의 경우, 인허가 기간과의 협의를 통해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하 절삭하여 표기하였으며, 이점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제 견본주택에는 68A, 68B,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68C, 84B, 105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평형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8B타입의 경우 인허가 단위세대도면과 반전된 형태로 시공되어있어, 이점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68A, 68B, 84A 주택형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상 구현된 VR을 확인하시고,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상 비건립세대 모형도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오피스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블록별 주거공용면적을 블록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 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공용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원, 도로 등 각종 기부채납시설면적은 사업부지면적에서 제외되어, 계약면적에 미포함 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등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및 경미한설계변경, 실시설계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068.5600A	068.9000B	068.8500C	084.9600A	084.9100B	105.9500	합계
	68A1, 68A2	68B1, 68B2	68C1, 68C2	84A1, 84A2	84B1, 84B2	105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범위)	장애인	4	5	2	7	5	23
	국가유공자 외	3	3	1	3	3	1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1	3	2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2	3	1	3	3	12
	중소기업근로자	3	4	1	5	4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10%범위)	14	17	6	21	17	2	77
신혼부부 특별공급(85㎡이하 주택건설량의 20% 범위)	29	34	13	42	35	0	15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 건설량의 3% 범위)	4	5	1	6	5	0	21
합계	61	73	26	90	74	2	32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동법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09.29.>,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02.02.>에 따라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인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가.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나.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다.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라.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나.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85㎡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
 - 다.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 다.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에 따라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하는 날에 맞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7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범위) : 7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와 다른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세대구성(3)	5	자녀 중 영유아 1명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범위) : 15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만족 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등기완료에 한함)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합니다.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 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득합산)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합니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7,947,891원	8,374,73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8,513,046원	9,025,258원	9,537,469원	10,049,681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521,049원 ~9,025,258원	7,947,892원 ~9,537,469원	8,374,735원 ~10,049,68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 이하	7,236,193원~ 7,839,208원	8,513,047원~ 9,222,467원	8,513,047원~ 9,222,467원	9,025,259원~ 9,777,362원	9,537,470원~ 10,332,258원	10,049,682원~ 10,887,15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견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11.]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09.30)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 필요)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간 전입[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입시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대상자로 전환합니다.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공급합니다.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가입하여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이면 접수 가능하며. 청약신청자 전원 추천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천제로 청약 접수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천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 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할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 관련 예금
민영주택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천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천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추천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2018.12.11) 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추천제.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정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대구광역시)	기타 시, 군(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세대원</div>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경쟁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 가족수 산정)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사실 증명원 -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 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이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분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특별공급은 주택소유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 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제 53조 제9호에 해당되는 소형저가주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③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IV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4.12 (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4.13 (화)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4.14 (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자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4.20.(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5.03.(월)~2021.05.07.(금) 10:00 ~ 16:00 • 장소 :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6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4.20.(화) ~ 2021.04.29.(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합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4.20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구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 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안내

구분	사전서류검수기간	계약기간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1.04.21.(수) ~ 2021.05.02.(일) 12일간, 10:00 ~ 17:00	2021.05.03.(월) ~ 2021.05.07.(금) 5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69번지)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기타사항은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기간 지정 발급 ※발급기간 :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청약통장소위 (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소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직계 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 비속(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구비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간 :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O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기간 지정 발급 ※발급기간 :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지역 확인서류 등)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구비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03.(월) ~ 2021.05.07.(금) 5일간, 10:00 ~ 16:00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69번지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제한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자격 검증서류	본인	• 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 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0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¹⁾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284-910015-70704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무이자”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타 금융기관 미적용)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대금 납부계좌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대상세대 : 68A타입(206동204호), 68B타입(206동202호), 68C타입(206동201호), 84A타입(202동201호), 84B타입(203동204호), 105타입(204동201호)]

- (해당 세대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LTV,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대출은행 앞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대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⑦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입주지정기간 : 60일)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1블럭 작은도서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 주민카페, 키즈카페, 2블럭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이 설치(1블럭 · 2블럭 입주민이 공동 사용 커뮤니티시설입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공급금액	
주택형(m ²)	타입		계약시	입주지정일
068.5600A	68A1	11,100,000	2,000,000	9,100,000
	68A2			
068.9000B	68B1	11,200,000	2,000,000	9,200,000
	68B2			
068.8500C	68C1	11,200,000	2,000,000	9,200,000
	68C2			
084.9600A	84A1	13,700,000	2,000,000	11,700,000
	84A2			
084.9100B	84B1	13,700,000	2,000,000	11,700,000
	84B2			
105.9500	105	16,800,000	2,000,000	14,80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비용	하나은행	계좌번호 : 284-910020-75104	주식회사 한양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주택전시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제출 바랍니다. [주택전시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합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본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결로 발생시, 시공사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단, 결로 발생이 고객의 귀책인 경우, 시공자의 책임은 면책)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선택 품목 리스트(무상옵션)

주택형	선택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M/H 설치기준	
68.5600A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은 유상옵션(빌트인김치냉장고)으로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껍형	
68.9000B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통합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은 유상옵션(빌트인김치냉장고)으로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껍형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미건립	
			선택형2	통합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껍형		
84.9600A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견본주택은 유상옵션(빌트인김치냉장고)으로 설치
				선택형2	통합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견본주택은 유상옵션(빌트인김치냉장고)으로 설치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껍형		
84.9100B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미건립

105.9500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미건립
	침실1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꺼움형	
				선택형1	알파룸 미설치형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2	알파룸 설치형	
				선택형1	분리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2	통합형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두꺼움형				

- 위 선택에 따라 창호, 가구, 등박스, 등기구, 각종 배선기구 등의 규모, 설치위치 및 수량이 상이하며,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 선택품목은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전 타입 김치냉장고장 선택은 유상옵선(빌트인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 타입(68A 제외) 침실2/3 가변형벽체 통합형 선택시 벽지는 침실3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 도어는 2개소 설치됨.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 타입 침실1의 알파룸은 설치형 선택시 침실1과 동일벽지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선)

■ 유상옵선(가전)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제품명(모델명)	업체명	공급금액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전 주택형	삼성 빌트인 클래딩 TBI 냉장고 (BRS665040SR)	삼성전자	5,400,000	1,000,000	4,400,000
빌트인 김치 냉장고	전 주택형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 (RQ22K5R[우]/L[좌]01EC)	삼성전자	1,200,000	300,000	900,000
현관에어샤워	전 주택형	에어샤워(AS-150)+에어브러쉬(DSC-300)	그렉스	650,000	300,000	350,000

■ 유상옵선(마감)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공간옵선	68A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타일아트월(주방 또는 복도)	1,700,000	300,000	1,400,000
	68B		2,000,000	300,000	1,700,000
	68C		1,500,000	300,000	1,200,000
	84A		1,800,000	300,000	1,500,000
	84B		2,200,000	300,000	1,900,000
	105		1,900,000	300,000	1,600,000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주체는 본 사업의 시공사인 (주)한양 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후 신제품 출시시 동계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일반냉장고 장으로 시공(문 없음)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발코니 기본형 선택시 냉장고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거실우물천장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선 미 선택시 간접등의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장의 사이즈는 다소 변경됩니다.

※ 거실우물천장 간접등 유상옵선 미 선택시 월PAD 전등 스위치 회로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3구 -> 2구 스위치 회로)

※ 견본주택은 주방 아트월타일(68A, 84A) 및 복도 아트월 타일(68B) 유상옵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벽지와 걸레받이가 설치되며, 타일 설치를 위해 설치된 문선 및 시트판넬 등의 크기는 변경됨, 미건립타입인 68C는 주방 아트월타일, 84B, 105는 복도 아트월타일이 유상옵션 품목이며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간옵션(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타일아트월)은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공급금액에 대한 계약금, 잔금 금액 및 납부일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시행사에서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과 시공에 관련한 사항은 시공사(주)한양과 무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빌트인 냉장고 외	하나은행	계좌번호 : 284-910020-76804	주식회사 한양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시 아래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 바랍니다.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1, 2, 3, 4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식당, 복도, 침실전체, 드레스룸, 파우더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 현관 <타일> 욕실(시멘트 몰탈포함), 발코니/보조주방(세탁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난방(욕실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 및 발코니/보조주방 바닥 방수, 배수 슬리브, 우수, 배수, 선희통
2) 벽,천장	<벽> 벽지(초배지포함) 및 벽체 마감, 거실 아트월 타일, 주방 및 욕실 세라믹,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포함 <천장>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몰딩 등 마감 일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져)
3) 조명기구	각실 조명기구 일체(욕실 포함)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제외]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4) 욕실	<위생기구>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욕실 타일, 천장재(천장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주방TV	설비배관, 소방관련시설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문틀(상부 덧판, 문선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 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대피공간,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파우더장(상판 및 조명 포함), 현관창고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붙박이장,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시스템선반(세탁실),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대피공간 완강기 설치(3층~10층)
--------------	---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068.5600A	068.9000B	068.8500C	084.9600A	084.9100B	105.9500
금 액	23,114,000	23,392,000	23,323,000	28,531,000	28,543,000	35,52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 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 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수량/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 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건출, 도장)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수용 및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남송초에 배치 가능(예정)이며, 중학생은 8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교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교군(2학교군)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대구남부교육지원청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 소유권확보 관련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3항 제28호에 의거 매도청구 진행상황을 명기함
-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의거 매도청구 대상 대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65-6대(20나305742 소유권이전등기) / 1034-19대(20나305438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1심)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의거 매도청구 대상 대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4-23도(16가합51621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50 소유권이전등기) / 74-4도(19가단58992 소유권이전등기) / 64-16도(16가합51607 소유권이전등기, 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1035-15도(16가합51645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74 소유권이전등기) / 66-11도, 68-7도, 68-10도(16가합51614 소유권이전등기, 20나22767 소유권이전등기) / 63-4도, 64-19도(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66-6도, 69-4도, 69-6도, 76-8도(20나22743 소유권이전등기) / 1034-10도(20나22750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3항 제30호에 의거 그밖에 사항을 명기함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60-1대(20나23333 소유권이전등기) / 61-4대(20나22767 소유권이전등기) / 61-9대, 1035-11도(20나22743 소유권이전등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예정부지(정비사업 준공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령해석례 08-0043),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로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372)

■ 일반유의사항

- 본 사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단지 내 조합분양+일반분양+보유지 등이 혼합 배치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본주택은 조합원 분양세대와 마감재 및 품질의 차이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2016.05.13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최초 사업승인접수 당시(또는 건축심의 단계)의 설계기준(주택법, 건축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최근 설계기준은 최초사업승인시점 이후 경과조치 항목으로 미반영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사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시 소방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2블럭의 경우, 동호수표기 변경예정이므로, 관련내용을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사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사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한양은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주택법 등 하자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로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나, 그 외 공급계약을 이유로 계약자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및 행정상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익없이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68A, 68B, 84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경관 조망형 창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개폐창이 아닌 창호의 외창은 개폐되지 않으며, 외부에 별도 난간이 없음. 또한 유리난간은 개폐창호 부위에만 설치되며, 크기 및 색상, 높이, 하드웨어는 실시공사 변경 될 수 있음. 이삿짐은 창호를 통한 이동이 어려우며,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주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거실우물천장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 선택시 간접등의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장의 사이즈는 다소 변경됩니다.
- 거실우물천장 간접등 유상옵션 미 선택시 월PAD 전등 스위치 회로는 변경될 수 있음 (3구 -> 2구 스위치 회로)
- 거실 아트월 및 추가선택 아트월의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또는 안내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뱀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관청 문의 바랍니다.]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습니다.
- TV수신의 경우, KBS에서 운영중인 송신시설로 지하2층, 지상24층 고층 건축물이 준공 된 후에도 전파경로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고층건물로 인위적인 난시청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전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의해 미래 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건설로 주변시설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주동 상부의 추가 반사판설치 및 관리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추가 반사판 설치에 따른 공사소음등과 같은 민원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18m 계획도로를 경계로 1블럭(101~106동)과 2블럭(201~206동)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대 대지분은 각 블럭별로 분배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블럭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됩니다.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액체방수 시공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 2016”에 따라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 4mm를 충족하여 시공합니다. 세대 전용부 및 공용부 타일 시공시 타일 뒷채움 기준 80%를 충족하여 시공합니다.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조경석쌓기 및 방음벽 등의 종류, 색상, 디자인,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레벨,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계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경계석, 계단, 조경석쌓기, 마운딩(구름)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본 아파트 2개의 블록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주변 인접 건물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기존 전신주 및 맨홀 설치, 기존 건물 및 신규 건물의 건설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유해 및 위험시설물(병원 및 신규시설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전 입주자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향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건립예정이며,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실외기실 및 그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이동 및 형태변경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변경 및 형태변경으로 인한 조정식재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식재변경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단지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영구음영 포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공간 명칭, 단지 주·부출입구, 주동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시에는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 (식재, 포장, 데크, 가벽, 마운딩,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파고라,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미술 장식품 등), 각종 시설물 계획 (옥탑시설물, DA, 차량차단기, 주차램프시설(지붕포함),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옥외주차장, 장애인 램프 및 난간, 장애인 전용 통로, 문주, 단지 내외부 옹벽, 경비실 및 택배보관실, 캐노피, 동 및 호수, 경로당 및 어린이집(옥외계단 및 파고라 포함), 커뮤니티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 실외기 보관소(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등), BI, 정화조 배기탑, 소방차 전용부서위치, 드롭오프존, 맘스라운지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도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콘크리트 옹벽, 전석, 조경석쌓기, 생울타리, 난간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단지내 도로(인도포함)를 점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BI,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시 검토로 인하여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
|----|----|---|

속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 부서공간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 공동주택은 총 12개동, 최고 24층 높이로 계획(동별로 층수는 상이함/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101~106동 과 201~206동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1블럭의 경우, 단지 동측에 위치해 있고, 서측에 부출입구,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2블럭의 경우, 단지 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해 있고, 북측에 부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내·외부 레벨차로 인한 데크식 설계로 되어있으며, 단지 1블럭 북측 104~106동 하부에 지하 1개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이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 2블럭 북측 204~206동 하부에 지하 1개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1블럭 104동, 2블럭 204동 남측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경비실은 1블럭의 경우 동측 주출입구, 2블럭은 서측 주출입구에 각 1개소씩 위치해 있습니다. (추후 설계 변경을 통해 개소가 증설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계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블럭 동측, 2블럭 서측 주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 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변경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 204동 1층에 어린이집, 106, 201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105, 205동 하부에 경로당, 106동 하부에 주민카페,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위치, 206동 하부에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실 등 위치하여 해당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블럭별로 상이 하게 계획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102동 후면, 104동 전면, 106동 전면 인근에 총 3개소, 202동 후면, 203동 측벽, 204동 전면, 206동 측벽 인근에 4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105동 후면, 206동 측벽 인근에 총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와 크기가 각 동 1층 필로티, 지상층, 옥상에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소음 및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는 각 블럭별 주동전체(101~106동, 201~206동) 및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맘스라운지 등) 주차램프 인근에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진동,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105동, 205~206동 1층에 근접하여, 발전기용 D/A(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전면부에 “가스경압기”가 설치되어, 냄새 미 소음, 진동,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블럭 단지북측에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근린생활시설등이 위치하여, 장비 및 시설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생활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블럭 104동과 인접하여 북측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덕트가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104동 옥상까지 설치됨에 따라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다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등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지모형 및 CG등에 표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2블럭 단지북측에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근린생활시설등이 위치하여, 장비 및 시설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생활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블럭 206동과 인접하여 북측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덕트가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206동 옥상까지 설치됨에 따라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다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등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지모형 및 CG등에 표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 보일러,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며, 이를 단지모형 및 CG 등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06동 남측과 201동 북측에는 어린이집 및 학원 차량이 대기 및 회차하는 맘스라운지를 설치하며, 이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램프 지붕 및 벽체의 위치, 형태, 크기, 마감재 및 디자인 등은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램프(장애인 겸용)의 위치, 형태, 크기, 길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은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동 북측 인접대지경계 부근에 지차체 요청으로 인해 단지 외부 출입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견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부장식물(BI포함)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출입구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동 지하1층 무인택배함이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1층 홀, 로비, 라운지,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각 동 및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위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에는 최상층은 승강기제어반 등의 설비가 설치되며,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피뢰침,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동 하부에 주민카페, 독서실, 작은도서관, 206동 하부에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실은 1블럭, 2블럭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포함), 경비실 등이며 내·외부시설물 및 내·외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동 지상1층, 201동 지하1층에는 MDF실, 방재실이 위치하며, 이용자 등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블럭 106동과 인접한 지하1층에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카페가 위치하며, 2블럭 206동과 인접한 지하1층에 GX, 휘트니스, 골프연습장이 위치하며 시설의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상 1,021세대 1개 단지로 입주민의 편의증진(부대복리시설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2개 블록으로 나누어 계획되었으며, 향후 관리 또한 1개의 단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유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조경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식재공간 확보를 위해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차로 및 보행로, 주차구역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관상용으로 직접 이용이 불가한 시설로써, 음용 및 들어가거나 오르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수공간의 설치로 인하여 102동, 105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인근세대는 조망,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조경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측 105동 남측, 106동 북측, 202동 북측, 204동 북측, 205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고, 103동 북측, 104동 남측, 203동 북측, 204동 남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며, 105동 북측, 205동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인근 단지 내부 도로에 소방차량 전용구역(12X6M)이 구획되며, 일부 구간이 친환경 포장재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단지 출입구는 1블럭의 경우, 차량, 주차대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블럭의 경우, 차량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해 있고, 북측에 부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1블럭에 3개소(101동과 106동 부근, 103동과 104동 부근, 105동과 106동 상부), 2블럭에 2개소(201동과 206동 부근, 204동~205동 상부)에 설치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1블럭, 2블럭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총 2개의 레벨(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레벨(층)간 이동은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경사로(램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지상층 레벨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출입구(램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블럭별 주차대수 및 세대당 주차대수가 상이하므로, 주차대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승인인가고시 기준 법규 적용으로,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택배차 진입 높이를 위한 층고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 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뽕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구는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렌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주차, 전기자동차주차 및 장애인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내의 모형 및 도면을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된 저층부세대는 차량의 전조등 및 소음, 매연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전기자동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며,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 불빛 및 소음, 매연등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 주출입구 문주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들이 추후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일부 환경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 업종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복층에 지하1층 데크 형태로 설치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인해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1블럭의 경우 8대 설치되며(지하 1층), 2블럭의 경우 11대 설치되며(지하1층) 특히 2블럭은 복층 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차단기를 통해 분리됩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로, 지상 주차 및 회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악취,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건물의 옥상은 인조잔디로 시공되며 분양시 홍보물에 표현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필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주방가구의 상판과 주방벽의 세라믹은 자재 패턴의 특성상 본 공사시 건본주택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이 불가합니다.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나.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세라믹, 벽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씽크대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도어에는 모티스타입, 그 외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문에 한해 고정부 모서리 1면에 손기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현관 디딤석은 분절되어 시공되며 분절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한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 내부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층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전원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수전+금구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 및 유상옵션 선택한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에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68A(건립)/68C, 68B(건립)/84B, 84A(건립)/105 타입이 같으며 마감과 조명(거실, 식탁, 침실)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됩니다. (단, 동일한 디자인 컨셉이더라도 타입별 평면에 따라 디자인 적용 부위, 형태, 개소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안방,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층고는 2.8M, 천장고는 2.3M(확장시 설치되는 거실 우물천장고는 2.42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거실우물천장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 선택시 간접등의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장의 사이즈는 다소 변경됩니다.
- 거실우물천장 간접등 유상옵션 미 선택시 월PAD 전등 스위치 회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구 -> 2구 스위치 회로)
- 견본주택은 주방 아트월타일(68A, 84A) 및 복도 아트월 타일(68B) 유상옵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벽지와 걸레받이가 설치되며, 타일 설치를 위해 설치된 문선 및 시트판넬 등의 크기는 변경됨, 미건립타입인 68C는 주방 아트월타일, 84B, 105는 복도 아트월타일이 유상옵션 품목이며, 본 공사시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홍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발코니, 주방,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주방액정TV, 조리기구선반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양문형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일반가구(수납장) 및 주방가구는 평형에 따라 일부 확장제공이며, 확장부분에 따라 가구 레이아웃 및 제공품목이 달라질수 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또는 미선택시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욕실장 등 일반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조대리석류(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와 주방의 세라믹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크기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중문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희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2(보조주방)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픽스유리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2(보조주방)에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열교환기 가동시 장비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보조주방(세탁실) 천장에 설치되는 68A, 68B, 84A, 84B 타입은 보조주방(세탁실)천장 마감을 하며 68C타입과 105타입은 보조주방(세탁실) 천장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68B, 84A, 84B 실외기실 상부로 전열교환기 배관이 노출되며, 전타입 실외기실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류 및 드레인의 위치 및 설치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그릴창으로 설치되며,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그릴창에는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확장시)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간섭여부를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구조계산 및 안정성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함문 제외)의 칼라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와 문 및 기타 창호부속자재의 사양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개수, 디자인, 형태, 규격,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확장시에만 적용됩니다.)
- 발코니의 난간대는 유리프레임 재질로 시공되며, 주개폐창이 아닌 창호의 외창은 개폐되지 않습니다. 창호의 특성상 이삿짐이동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삿짐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 / 설비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 및 설치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액세서리류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져,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환기용 디퓨져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재질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환기조절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주방발코니, 신발장, 현관창고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욕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윗층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아랫층 세대(비확장형, 확장형)는 본 공사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및 램프의 개수, 위치 등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에 따라 일부 타입에 한해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동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 및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세대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용상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삼성전자 홈IoT서비스 (이하 "삼성 홈 IoT서비스")
 - ① "삼성전자 홈IoT서비스는 준공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세대별 구성되는 홈넷 구성에 따라 변동/추가될 수 있습니다.
 - ② 준공일 2년 후부터 신청세대에 한하여 유상으로 전환되며, 요금 및 세부사항은 추후 세대별 공지, 체결될 삼성전자 홈 IoT 계약에 따라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단, "삼성 홈 IoT 서비스" 미가입시 (주)한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홈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전제품 제어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③ "삼성 홈 IoT 서비스" 를 통해 세대 내 기본으로 공급되는 삼성전자 가전과, 세대별 유상으로 선택하는(유상옵션) 삼성전자의 가전제어(오븐제외)가 모두 가능합니다.
 - ④ "삼성 홈 IoT 서비스" 는 삼성전자의 정책에 의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⑤ "삼성 홈 IoT 서비스" 는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삼성 홈 IoT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인터넷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 ⑥ 음성인식스피커는 삼성전자 홈 IoT 서비스와 연동되는 제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제조사 미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하여,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 | | |
|------|---|
| 건물입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옹벽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및 C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BI 및 루버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BI 및 동호수는 경관조명으로 설치되며, 아파트 옥탑층 경관 및 일부 측벽의 특화조명에 따른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외벽에 보일러 연도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및 주방 후드 배기구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타공시공이 이루어지며 외부로 연도가 설치되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지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 창호(크기, 모양, 색, 사양 등), 난간(크기, 모양, 색, 재질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 재질, 사양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들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등의 위치, 형태, 크기, 자재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저층부 석재, 옥탑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단지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건립이 취소되거나,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변 건축물은 추후 건축공사 진행으로 인해 분양당시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먼지, 조망권 침해등의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블럭 서측편에는 그린맨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1블럭편에 그린맨션 부지의 높은 굴뚝이 위치함. 1블럭 북측으로는 “세강병원”이 있으며, 세강병원 주차장에 코로나 검역소를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항은 향후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 공원, 완충녹지 등) 및 대구광역시 시청 이전계획(신청사 건립)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은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주변 환경
- 달서구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 될 수 있습니다.(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선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의 도로 폭이며 현황 도로 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비고
회사명	(주)吉중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한동엔지니어링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감리금액	₩2,773,920,611원	₩800,050,025원	₩836,000,000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적용)

구분 고기밀 창호	적용여부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등 형식 : 4track(T22+T22), 기밀성 KS F2292 기준 2등급 / 설치위치 : 거실 및 침실
고효율 기자재	적용	펌프(0.75kw이상)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배수펌프제외) 전동기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급수펌프, 변압기, 전동기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 장치	적용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통합형 네트워크스위치 설치(온도조절장치 포함), 안방용(전실 제어가능)
절수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양변기, 수전류(손빨래수전, 세탁수전, 화조물뿌리개용수전 제외)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1블럭</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대구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1BL) 2. 신 청 자 :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td><td>★★★</td></tr> <tr><td>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담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20. 단열면 투시율 표시</td><td>-</td></tr> <tr><td>21. 사무공간 녹지율</td><td>★</td></tr> <tr><td>22. 생활주거용</td><td>★</td></tr> <tr><td>23. 비오물 조정</td><td>★</td></tr> <tr><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td><td>★★★</td></tr> <tr><td>25. 차량 대기오염 저감</td><td>-</td></tr> <tr><td>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개선 점수</td><td>★★★</td></tr> <tr><td>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td><td>★★★</td></tr> <tr><td>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td><td>★★★</td></tr> <tr><td>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1. 차량 대기오염 저감</td><td>★★</td></tr> <tr><td>12. 세대 내 온도 측정</td><td>★★</td></tr> <tr><td>13. 실내공기 질 관리</td><td>★★</td></tr> <tr><td>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차단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방라인거리</td><td>★★★</td></tr> <tr><td>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7월 23일</p> <p>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면 투시율 표시	-	21. 사무공간 녹지율	★	22. 생활주거용	★	23. 비오물 조정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	★★★	25. 차량 대기오염 저감	-	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	★★★	4. 생활환경개선 점수	★★★	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	★★★	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	★★★	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	★★★	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1. 차량 대기오염 저감	★★	12. 세대 내 온도 측정	★★	13. 실내공기 질 관리	★★	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차단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방라인거리	★★★	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	★	6. 피난설비	★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1블럭</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명명 : 대구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1BL) 건 속 주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4층 면 적 : 52,390.14㎡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एम에이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 KRREA-G2020C-1899 인증기간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0. 07. 23.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p> <p>인증 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서(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7월 23일</p> <p>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2블럭</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대구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2BL) 2. 신 청 자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td><td>★★★</td></tr> <tr><td>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담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20. 단열면 투시율 표시</td><td>-</td></tr> <tr><td>21. 사무공간 녹지율</td><td>★</td></tr> <tr><td>22. 생활주거용</td><td>★</td></tr> <tr><td>23. 비오물 조정</td><td>★</td></tr> <tr><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td><td>★★★</td></tr> <tr><td>25. 차량 대기오염 저감</td><td>-</td></tr> <tr><td>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개선 점수</td><td>★★★</td></tr> <tr><td>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td><td>★★★</td></tr> <tr><td>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td><td>★★★</td></tr> <tr><td>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1. 차량 대기오염 저감</td><td>★★</td></tr> <tr><td>12. 세대 내 온도 측정</td><td>★★</td></tr> <tr><td>13. 실내공기 질 관리</td><td>★★</td></tr> <tr><td>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r><td>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차단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방라인거리</td><td>★★★</td></tr> <tr><td>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7월 23일</p> <p>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면 투시율 표시	-	21. 사무공간 녹지율	★	22. 생활주거용	★	23. 비오물 조정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	★★★	25. 차량 대기오염 저감	-	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	★★★	4. 생활환경개선 점수	★★★	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	★★★	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	★★★	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	★★★	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1. 차량 대기오염 저감	★★	12. 세대 내 온도 측정	★★	13. 실내공기 질 관리	★★	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차단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방라인거리	★★★	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	★	6. 피난설비	★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2블럭</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건축명명 : 대구 송현2동 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2BL) 건 속 주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78-3번지 일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4층 면 적 : 55,836.83㎡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एम에이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 KRREA-G2020C-1900 인증기간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0. 07. 23.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p> <p>인증 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서(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7월 23일</p> <p>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p>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면 투시율 표시	-																																																																																																																																																																										
21. 사무공간 녹지율	★																																																																																																																																																																										
22. 생활주거용	★																																																																																																																																																																										
23. 비오물 조정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	★★★																																																																																																																																																																										
25. 차량 대기오염 저감	-																																																																																																																																																																										
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	★★★																																																																																																																																																																										
4. 생활환경개선 점수	★★★																																																																																																																																																																										
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	★★★																																																																																																																																																																										
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	★★★																																																																																																																																																																										
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	★★★																																																																																																																																																																										
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1. 차량 대기오염 저감	★★																																																																																																																																																																										
12. 세대 내 온도 측정	★★																																																																																																																																																																										
13. 실내공기 질 관리	★★																																																																																																																																																																										
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차단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방라인거리	★★★																																																																																																																																																																										
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	★																																																																																																																																																																										
6. 피난설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2. 생활주거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담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면 투시율 표시	-																																																																																																																																																																										
21. 사무공간 녹지율	★																																																																																																																																																																										
22. 생활주거용	★																																																																																																																																																																										
23. 비오물 조정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의 적용	★★★																																																																																																																																																																										
25. 차량 대기오염 저감	-																																																																																																																																																																										
26. 단열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유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열내-외 방열 계수로 조성 및 열역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장애인주차장 및 장애인도보의 적합성	★★★																																																																																																																																																																										
4. 생활환경개선 점수	★★★																																																																																																																																																																										
5. 건설행정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등 계획 및 계획 이행	★★★																																																																																																																																																																										
7. 시공후 생활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공개	★★★																																																																																																																																																																										
9. 단열내-외 방열 계수의 적정성	★★★																																																																																																																																																																										
10.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1. 차량 대기오염 저감	★★																																																																																																																																																																										
12. 세대 내 온도 측정	★★																																																																																																																																																																										
13. 실내공기 질 관리	★★																																																																																																																																																																										
14.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5.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6.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7.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8.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19. 생활주거용 관련 정보공개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차단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방라인거리	★★★																																																																																																																																																																										
5. 소화 및 제연 유닛설비	★																																																																																																																																																																										
6. 피난설비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p>구분 내진등급 I</p>	<p>적용여부 VII-0.208g</p>
----------------------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81,113,000,000	제01282021-101-0001300호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 * 위 내용에 따라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보증부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부과금 및 추가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부과금 및 추가부과금을 이의 없이 납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주택분양보증 약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

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송현2동송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한양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211, 2층(송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법인등록번호	171871-0005877	110111-0144347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ujain-dg.co.kr>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869번지

■ 분양문의 : ☎ 1600-081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여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